

제937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안 건 명 : 산골고개 생태통로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

심 사 일 : 2013. 10. 14.

사업개요

- 용역비 : 242백만원(공사비 : 4,169백만원)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개월
- 사업규모 : 생태통로(폭 13,6m, 연장 55m) 및 산책로 등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
- 발주부서 : 은평구 공원조성과

심사결과 : 재심사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○ 감리 적정성 재검토 및 방침후 심의요청 - 본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대상 외의 사업으로, - 감리 적정성 검토시에는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리시행 여부를 결정하고,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분 책임감리, 검측감리, 시공감리, 전면책임감리 순으로 감리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방침 필요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
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	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면·중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

<첨 부>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	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(첨부)등록	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</u> 및 <u>과업내용서</u> 를 <u>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</u>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	○ 발주부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<u>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u> - 단, <u>서울시</u> 항목별 세부 평가 <u>기준과</u> 모든사항이 <u>동일한 경우</u> 에는 <u>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u>
심사 및 심의전 확인	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	○ 기술용역타당성 <u>심사</u> 및 건설기술심의 <u>요청 전 유지관리부서</u> 및 <u>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u> - <u>사업계획 수립시</u>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<u>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(13.5.22)</u>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
타당성 조사용역	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	○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역준공시	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	○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<u>준공시</u>) -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<u>준공시</u>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<u>시장방침 제35호(13.5.24)</u>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
설계시	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	○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</u> 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<u>지반조사, 현황 측량</u> 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진	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	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<u>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</u>